

# 선박안전관리사 Q & A

## □ 시험과목 관련

○ 선택과목 중 항해·기관 과목의 경우에는 해기사 면허의 몇 급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는 것인가요?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해기사 시험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선박안전관리사 등급의 수준이 해기사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려하면, 선박안전관리사 1급은 2급 해기사 이상, 선박안전관리사 2급은 3급 해기사 이상의 지식은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선택과목 면제란 무엇인가요?

☞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은 공통과목(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과 선택과목(항해, 기관, 산업안전관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택과목의 경우 응시자가 1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하게 되며, 「선박직원법」에 따른 3급 이상의 항해사는 항해 과목 면제, 3급 이상의 기관사는 기관 과목 면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관리 과목이 면제됩니다. 또한, 선택과목 면제 대상자가 선택과목을 면제받지 않고 선택과목을 응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2급 이상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의 면접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응시과목과 동일하며, 필기시험의 선택과목 면제자에 한하여 해당 과목이 면접시험에서 면제됩니다. 즉, 선택과목 면제대상자가 필기시험에 선택과목 면제를 받지 않은 경우 면접시험도 동일하게 면제되지 않습니다.

○ 선박안전관리사 시험은 1년에 몇 번 시행되나요?

☞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의거 자격시험은 1년마다 1회 실시합니다. 다만 수요 등을 고려하여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시험 실시공고는 시험 시행 90일 전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 선박안전관리사의 합격기준과 과목 합격이 있나요?

☞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의거 필기시험의 경우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면접시험의 경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에 의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해기사 시험과 달리 과목 합격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 응시자격 관련

○ 선박안전관리사 1급을 응시 할 경우, 승무경력증명서상 3급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승선하였으나, 승선 중 2급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 승무경력증명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해당 면허를 소지한 이후의 경력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2급 해기사 면허의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승무경력만 인정됩니다. 해기사 면허의 최초 취득일은 자격시험 응시 시 또는 지방청 방문 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응시자격에 대한 증명방법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서류 제출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기사 면허의 취득정보는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 해기사 면허의 최초 취득일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온라인) 또는 지방청 방문 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산시스템 이전의 수기 정보의 경우에는 지방청 등을 방문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승무경력증명서를 통한 선박안전관련 직무분야에 대한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승무경력을 통한 응시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선원업무처리지침 별지13호 서식에 의한 승무경력증명서를 원칙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무경력 증명서에는 담당직무와 해기면종 등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정부24를 통해 '승무경력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승선경력과 실무경력을 합산하여 응시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실무에 종사한 경력에는 승선경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승선경력과 실무경력을 합산한 경력으로 응시자격이 산정됩니다.

승무경력의 경우 원칙적으로 승무경력증명서로 증명하셔야 하며, 실무에 종사한 경력의 경우 실시공고 내 경력증명서 양식을 사용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은 실시공고의 직무분야 인정 업무명(예시)를 참고하시고, 근무기간과 직무분야가 명시되지 않거나 직무분야 이외의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인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한 경력은 모두 인정받을 수 있나요?

☞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4의3에 의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합니다. 실무에 종사한 경력은 실시공고의 직무분야 인정 업무명(예시)를 참고하시고, 근무기간과 직무분야가 명시되지 않거나 직무분야 이외의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인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관련 구비 서류를 갖추어 자격시험에 접수하여야 하며, 서류 심사 이후 경력인정 여부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 종사한 경력은 공고 내 경력증명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 실무에 종사한 경력의 경우 실시공고의 별지 서식을 기본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별지 서식 외 인정 가능한 경력 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
  - 국가 및 공공단체(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포함)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 또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은 실시공고의 직무분야 인정 업무명(예시)를 참고하시고, 근무기간과 직무분야가 명시되지 않거나 직무분야 이외의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인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선박안전관리사 1급 응시를 희망하는데, 조선 부분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습니다. 업무 예시에 있는 자격보유자로서 5년 이상 근무 인정하여 응시 가능하나요?

☞ 선박안전관리사 1급 응시자격에 2급 항해사,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조선 부분 포함)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응시 가능합니다.

○ 해기사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응시자격과 선택과목 면제를 받을 수 없나요?

☞ 해기사 면허의 유효기간의 만료 여부는 응시자격과 선택과목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자격시험 응시와 선택과목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선택과목 면제를 받으시려면 해기사 면허 사본을 응시원서 접수 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응시자격 및 선택과목 면제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기사 시험의 경우 시험 응시 후 부족한 승무 경력을 충족해서 합격 유효기간 내 면허 발급이 가능한데, 선박안전관리사도 해당되나요?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의 경우 면허, 자격증 및 경력서류 등 등급별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 자격 등을 합격하여 취득(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승무경력이 부족한 경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유급휴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유급휴가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원법」 제70조에 따라 2005년 10월 1일 이후의 승선경력의 경우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을 가산(단,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연해구역(이하 “연해구역”이라 한다)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5일을 가산)
- 「선원법」 제70조에 따라 2005년 10월 1일 이전의 승선경력의 경우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5일을 가산(단,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4일을 가산)
- 1개월 미만의 승무기간에 대하여는 비율로 계산하되, 1일 미만은 1일로 하여 계산
-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는 1년간 80% 이상 계속하여 승무한 경우 1년에 대하여 15일을 가산(단, 1년간 80% 미만으로 승무한 경우에는 1개월에 대하여 1일을 가산)

상세 안내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서류 제출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선 면허의 경우 응시자격이 되지 않나요?

-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항해사의 경우 상선 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응시 자격 및 선택과목 면제가 가능하며, 기관사, 운항사의 경우 상선·어선면허 구분 없이 응시자격 및 선택과목 면제가 가능합니다.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의 특례 및 경과조치**

○ 선박안전관리사 특례교육과 이에 따른 별도 시험은 언제 진행되나요?

- ☞ 「해사안전법」 부칙 제4조에 의거 2024년 1월 5일(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선임되어 안전관리(책임)자로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하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선박의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했던 사람은 무조건 올해 선박안전관리사 시험을 응시하여 자격증 취득을 해야 하나요?

- ☞ 2024년 1월 5일 기준으로 종전에 선임되어 안전관리(책임)자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자격취득을 2024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유예하므로, 2027년 1월 5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해사안전법」 개정규정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3년이 되는 날에 해임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기타**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관련 참고서적이나 문제집을 연수원에서 판매하나요?

- ☞ 저희 연수원에서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관련 참고서적이나 문제집을 별도 판매할 계획이 없습니다.

○ 시험문제 관련한 예시 문항 등 관련 사항을 알 수 있나요?

-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 문제와 정답은 비공개이므로 별도의 시험문제 예시 문항 등의 공개는 없습니다.

○ **선박안전관리사 응시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

- ☞ 선박안전관리사 응시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다만, 정부 방침에 의해 향후 응시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연수원에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교육이 있나요?**

- ☞ 저희 연수원에서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관련 별도 시험대비 교육은 시행할 계획이 없습니다.